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23
----------	------

2020년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1년 2월 5일
- 다. 회부일 : 2021년 2월 9일
- 라. 상정일 :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을 市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0-1(고덕로 399)
- 사용자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1,387.9 m^2 , 건물 연면적 7,211.5 m^2
- 사용허가 기간 : 2021.3. ~ 2026.3. (5년)

2)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운영은 서울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
-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용료 면제를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시민 학습권 제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1.1.12.)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심의결과 : 적정('21.1.15.)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기부채납 시설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舊서울승합부지, 강동구 고덕동 210번지)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5년간 면제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음.

〈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0-1(고덕로 399)
- 사용자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1,387.9㎡, 건물 연면적 7,211.5㎡
- 사용허가 기간 : 2021.3. ~ 2026.3. (5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현황 사진 〉



〈 컨셉 및 공간구성 〉



2층 시민홀



3층 시민지혜오름
(열린도서공간)



4층 미래홀

- 사용료 면제대상은 건물과 토지이며, 건물은 복합단지 내 건물 일부로,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총 면적은 7,211㎡이고, 건물평가액은 80억원이며, 부지는 1,387.9㎡로 부지평가액은 86억 6,327만원으로, 사용료 면제대상의 총 재산평정가격은 166억 6,666만원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산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모는 연(年) 1억 6,667만원 수준임.

〈 본 사용료 면제 대상의 재산목록 〉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천원)	감면액(천원)	재산종류	재산관리관	이용현황
토지	강동구 고덕동 210-1	1,387.9	8,663,272	86,632	행정재산	평생교육과	대지
건물	강동구 고덕동 210-1	7,211.5	8,003,390	80,034	행정재산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

※ 재산목록별 재산가액과 사용료

- 건물평가액(시가표준액) : 80억 339만원
- 부지평가액(개별공시지가) : 86억 6,327만원
- 재산평정가격(건물+부지) : 166억 6,667만원
- 재산평정가격에 따른 사용료 : 1억 6,667만원
-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감면액 : 1억 6,667만원

※ 본 동의안의 감면대상 건물평가액(시가표준액) : 80억 339만원

	건물(㎡)			건물평가액 (천원)	비고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상 1층	138.21	-	138.21	209,47	시가표준액 (강동구 재산세과)
지상 2층	2,327.95	2,327.95	-	2,649,673	
지상 3층	2,372.68	2,372.68	-	2,571,985	
지상 4층	2,372.68	2,372.68	-	2,571,985	
합계	7,211.52	7,211.52	-	8,003,390	

- ※ 본 동의안의 감면대상 부지평가액(개별공시지가) : 86억 6,327만 1,800원
 - 2020.5.29.기준 개별공시지가 : 6,242,000원
 - 부지면적 : 1,387.9㎡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공시지가 = 1,387.9㎡×6,242,000원 = 8,663,271,800원

- ※ 사용료 감면 대상(행정재산)의 재산평정가격 : 166억 6,667만원
 - 본 동의안의 감면대상 건물 평가액 : 80억 339만원
 - 본 동의안의 감면대상 부지 평가액 : 86억 6,327만원
 - 건물 평가액(80억 339만원) + 부지평가액(86억 6,327만원) = 166억 6,667만원

※ 연간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 1억 6,667만원

-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산정 근거 및 기준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산출 = 1억 6,66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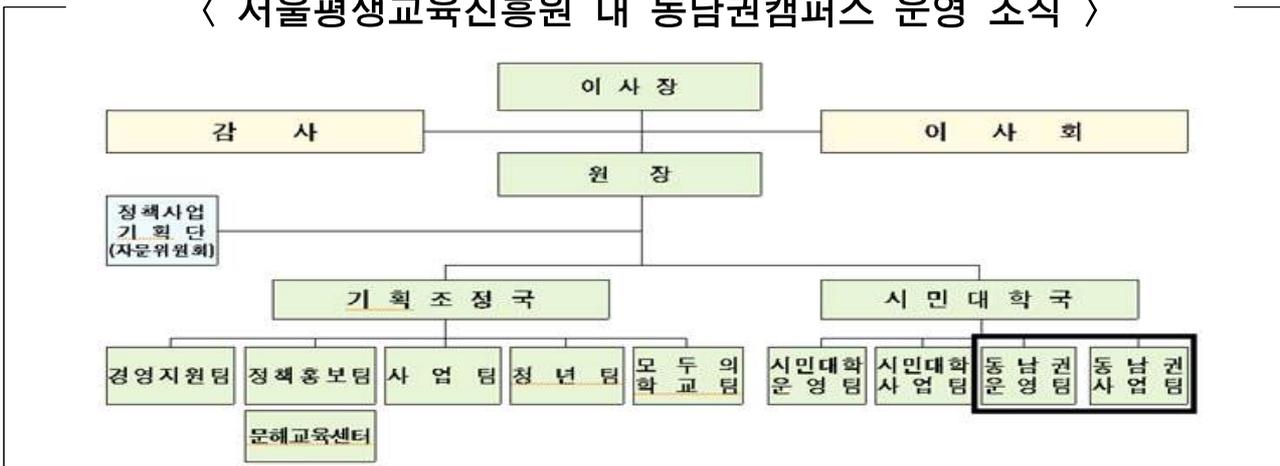
- ▶ 계산식 : 재산평정가격(건물+부지) × 사용요율(10/1,000)
- ▶ 계산 : (8,003,090,426원 + 8,663,271,800원) × $\frac{10}{1,000}$ = 166,666,622원

※ 연간 동남권캠퍼스 사용료 감면액 : 1억 6,667만원

나.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 검토

-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학, 인문학, 문화예술 등의 평생교육과정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이하 '동남권캠퍼스')는 진흥원의 시민대학국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동남권 지역(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시민적 요구, 시대적 필요성 등을 반영한 학습기회와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평생교육시설로 총 3개층(2~4층)으로 구성하고 있고,
 - 총 19명의 인력이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5개의 정규과정(인문학, 시민학, 서울학, 문화예술학, 사회경제학)과 함께 기획강좌, 특화강좌(미래학, 그린미래 등) 등을 3월 임시운영에 이어 4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에 있음.

〈 서울평생교육진흥원 내 동남권캠퍼스 운영 조직 〉



〈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인력 운영현황 〉

(단위:명)

구분		동남권운영팀	동남권사업팀
계		19	6
정규직	팀장	1	1
	팀원	5	5
기능직	보안	2	-
	미화	5	-

〈 2021년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주요사업 계획안 〉

(단위:천원)

실행단위	사업 내용	소요예산
① 미래학 교육과정 운영	· 미래학 특화과정, 민간연계 시민대학	195,370
② 그린미래과정 운영	· 생활환경학 특화과정, 민간연계 시민대학	79,270
③ 동남권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5개 학과 정규과정 및 특별강좌	171,380
④ 동남권캠퍼스 자문단 운영	· 특화교육과정 정기자문, 이슈별 수시자문	25,432
⑤ 마니아 클래스 운영	· 마니아활동 시민·단체 지원 및 홍보	38,500
⑥ 시민지혜오름 활성화	· 북 큐레이션 존 운영, 책읽기 소모임	150,000
⑦ 동남권캠퍼스 유희공간 활성화 사업	·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공간 기획	30,000
⑧ 시민 ^m 기획단 운영	· 시민 ^m 기획단 조직 및 활동 지원	29,250
⑨ 코로나 평생학습꾸러미 Safe Learn Kit 운영	· 평생학습 챌린지 활동 키트 제작	80,000
⑩ 캠퍼스 통합 홍보 추진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통합 홍보	66,758
⑪ 캠퍼스 개관 및 프로그램 홍보	· 신규 개관 홍보 및 인지도 확산	31,158
※ 동남권캠퍼스 시설 개·보수비	· 안심 캠퍼스(그린존)조성, 시설·장비 수리	221,100
※ 동남권캠퍼스 자산취득비	· 미조성공간 사무기기·사무가구 구입	327,693
※ 동남권캠퍼스 시설운영 공통경비	· 통합 관리비, 통신료 등 기관공통경비	450,311
합 계		1,896,222

〈 2021년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예산집행 계획 〉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미래(동남권)캠퍼스 운영	1,896	22	815	639	420
		계획수립 입시운영	교육과정 운영 공간 조성	교육과정 운영 공모사업 진행	교육과정 운영 평가회

- 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비영리사업인 서울자유 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무상사용이 필요하며, 평생교육국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각 캠퍼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며,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4월부터 정상운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출연금)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진흥원에게 동남권캠퍼스의 부지와 건물을 사용토록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평생교육국의 세출(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중 동남권캠퍼스 사용료)과 세입(동남권캠퍼스 사용료) 상계가 매년 발생하고, 국세부담(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용료의 10%)이 매년 발생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보호, 공익사업 추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수의계약, 감면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 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동남권캠퍼스의 사용료 감면요건은 ① 서울시가 출연한, ② 비영리 ③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④ 비영리 사업에 한정하여, ⑤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이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감면)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진흥원의 세입은 대부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법(公法)으로 분류된 법령(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며, 근거 법령과 조례에 따른 운영목적이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의회의 동의를 얻기 이전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데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근거법령에 따른 법인 구분

- 사법(私法) :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이익충돌 시 조정·해결을 목적으로 함.
- 공법(公法) : 공익과 사익 조정, 공권력의 기능, 권한의 확정·제한을 목적으로 함.
- 설립 근거별 법인 구분 : 공법을 설립근거로 한 법인은 공법인, 사업을 설립근거로 한 법인은 사업인으로 구분함.

※ 영리와 비영리 구분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영리활동(사업)의 유무가 아닌 ①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② 의도적·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지 여부임. 이는 법인구분 뿐 아니라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기준으로 적용됨.
- 영리법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달성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념으로, 설립근거는 「상법」을 따르고 있음.
「민법」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사업의 공익성이 있어야 하나, 공익성의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이견(광의적 vs 협의적 / 직접적공익 vs 간접적공익 / 공익현재성 vs 공익미래성)이 있음.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동남권캠퍼스(밀줄로 표시)의 사업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11.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2.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은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사용료 면제목적이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와 함께 수의계약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본 사용료 면제대상물은 2017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형성된 행정재산이고, 평생교육국은 본 행정재산 활용방안으로 동남권캠퍼스 조성계획(2018년)을 수립했으며, 계획의 변경없이 본 재산을 인수하고, 사용·수익 허가와 함께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본 대상부지의 개발 경위

본 대상지 일대(고덕동 210-1번지)는 舊서울승합부지로 불리던 곳으로 1983년부터 버스차고지로 이용되었으며, 2002년 공영차고지로 변경되었고, 2017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용도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후 증가한 연면적 중 일부를 기부채납할 계획에 따라 공공기여형 복합단지(주거·문화·체육·공공업무 등)로 건립되었음.

-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를 24개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중 진흥원이 동남권캠퍼스를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속하는 바, 수의계약 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③ 법 제20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 24. (생략)

○ 「공유재산법」은 사용·수익의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사용료 면제기간도 5년 이내로 산정하여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평생교육국은 동의안에 사용료 면제기간의 연·월까지만(2021.3.~2026.3.) 명시하여, ①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② 의회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한 사용기간(5년)을 초과(61개월)한 사용료 면제기간을 동의토록 하며, ③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소급 적용(의회의 의결 예상일:2021.3.5., 적용일:2021.3.1.)될 수도 있는 해석이 모호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사용·수익 기간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적용되며, 그 사용료 면제기간도 사용·수익 허가기간에 따라 결정되어, 허가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면제기간을 산정하여 위와 같은 모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평생교육국은 본 대상물의 소유권 취득(2020.12.29.) 후 사용·수익을 위한 허가 절차(공유재산심의회, 2021.1.15., 심의결과:적정)를 거친 직후 지체없이 동의안을 제출(2021.2.5.)하는 등 동남권캠퍼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짐.

※ 동남권캠퍼스 추진경위

· 2018.07.19. :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조성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71호)

- 2020.08. : 대상물의 준공 승인
 - 2020.08. : 기부채납 가액산정 요청(서울시-강동구)
 - 2020.12. : 기부채납 가액산정 통보(강동구-서울시)
 - 2020.12.21. :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시설물 인수계획 수립(평생교육과-12964)
 - 2020.12.23. :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사용수익허가 신청(평생교육진흥원)
 - 2020.12.23. :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계획 수립
 - 2020.12.29. : 서울시 소유권 이전 (재산관리관 : 평생교육국)
 - 2021.01.15. : 공유재산심의회 (사용·수익허가 심의, 심의결과 : 적정)
 - 2021.02.05. : 사용료면제 동의안 제출
- 다만, 평생교육국과 진흥원은 지난 해(2020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인력을 채용하여 1년 동안 개관준비를 진행하였고, 2월 초 보도자료(2021.2.10.)를 통해 동남권캠퍼스의 운영일정(2021.3.9. 임시개방, 2021.4. 정식개관)을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동의안의 제출일(2021.2.5.)과 의결일(2021.3.5.)은 확정되어 사용·수익허가 기간 및 사용료 면제기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미확정 정보를 수록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의회의 동의는 ‘사용료 면제 여부’에 한정되어 명확한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의회의 동의는 대상물의 위치·규모·기간, 사용자, 사용목적 등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착오 없는 종합적인 심의가 요구되는바,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동의안 제출에 평생교육국의 주의를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 안 번 호	2223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건물을 市 출연 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0-1(고덕로 399)
- 사 용 자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사용허가 면적 : 토지 1,387.9 m^2 , 건물 연면적 7,211.5 m^2
- 사용허가 기간 : 2021.3. ~ 2026.3. (5년)

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운영은 서울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
-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용료 면제를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시민 학습권 제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1.1.12.)

-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3호

- 심의결과 : 적정('21.1.15.)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최홍주 (☎ 2133-3963)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